

예 산 총 칙

제1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	계	7,746,068,832	232,382,065
일	반 회 계	6,333,463,145	190,003,894
특	별 회 계	1,412,605,687	42,378,171
	공 기 업 특 별 회 계	298,887,192	8,966,616
①	상 수 도 사 업	141,685,104	4,250,553
②	하 수 도 사 업	157,202,088	4,716,063
	기 타 특 별 회 계	1,113,718,495	33,411,555
①	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	412,460,256	12,373,808
②	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	9,408,990	282,270
③	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	366,142	10,984
④	하 남 3 지 구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	4,857,019	145,711
⑤	택 지 개 발 사 업 특 별 회 계	94,813	2,844
⑥	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	37,415,447	1,122,463
⑦	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	5,930,252	177,908
⑧	학 교 용 지 부 담 특 별 회 계	16,334,178	490,025
⑨	산 업 단 지 특 별 회 계	3,552,856	106,586
⑩	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특 별 회 계	54,828,076	1,644,842
⑪	도 시 철 도 사 업 특 별 회 계	378,599,460	11,357,984
⑫	소 방 특 별 회 계	189,871,006	5,696,130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 과 같다.

제3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(변경)조서” 와 같다.

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,170,255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63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지방채 상환 원리금 등),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.